

통합메시징시스템 운영 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

I 개 요

- **감사대상:** 구본청, 보건소 등 전 부서(동) 56개 부서
- **감사범위:** 2016. 1. 1. ~ 2019. 6. 30. 까지 통합메시징시스템 문자전송내역
- **감사기간:** 2019. 7. 29.(월) ~ 10. 11.(금)
- **감사방법:** 통합메시징시스템 DB자료 '키워드(모임, 약속 등)' 검색을 통한 감사
- **감사 중점사항:** 통합메시징시스템 사적 이용 방지관리 및 개선

II 감사결과

- **통합메시징시스템 사적용도 현황**
 - 총 00건 중 00건 / 00명
- **조치 및 개선사항**
 - 매년 문자시스템 사적이용 예방 방지 종합대책 수립 시행 ⇨ 00과
 - 문자시스템 등 공용물 사용에 대한 직원교육 실시 ⇨ 전 부서장
 - 문자시스템 사적 반복 다량 이용직원 00명 주의 조치
 - 향후 사적인 목적으로 재사용시 훈계 등 신분상 엄중 조치

III

통합메시징시스템 특정감사 세부 감사결과

1 총 평

❖ 통합메시징시스템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,

-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행동강령」 제21조(공용물의 사적 사용·수익의 금지)에 의해 공무원은 관용 차량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·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·수익해서는 안되며,
- 또한 00과에서는 통합메시징시스템 사적이용 금지 공문을 총 3회(2019.05.23./2019.01.28./2017.9.26.)를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,
- 2016년~2019년 6월말까지 통합메시징시스템 사용자 00명은 총 00건을 업무용이 아닌 사적으로 메시지를 발송하여 ‘일하는 분위기의 공직기강’을 훼손하였음

❖ 조치사항

- 매년 문자시스템 사적이용 예방 방지 종합대책 수립 시행 ⇨ 00과
- 문자시스템 등 공용물 사용에 대한 직원교육 실시 ⇨ 전 부서장
- 문자시스템 사적 다량 반복 이용직원 조치 ⇨ 신분상 “주의” 조치
- 향후 사적인 목적으로 재사용시 훈계 등 신분상 엄중 조치

2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

1. 통합메시징시스템 사적 이용 및 관리 소홀

지적사항

가. 현 황

- 00과에서는 2009년 5월부터 단문 뿐만 아니라 장문·이미지 전송 서비스, 음성, 팩스 등 다양한 메시지를 웹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공용 통합메시지시스템(UMS)을 운영 관리하면서 매월 평균 00만 건 이상의 문자발송 요금으로 평균 약 00원 이상 지출하고 있음

※ 단문 메시지 1건당 10.56원, 장문 메시지 1건당 27.72원

나. 위법·부당내용

-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 따라 확정된 예산은 정해진 목적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하고, 세출예산은 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여야 하며,
-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행동강령」 제21조(공용물의 사적 사용·수익의 금지)에 의해 공무원은 관용 차량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·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·수익해서는 아니 됨
- 그러나 통합메시징시스템을 이용하는 일부 이용자 총 00명은 예산으로 운영하는 공용 통합메시징시스템을 일부 사적으로 사용 사례 “친구 안부”, “가족 모임 일정”, “생일, 승진 등 축하 인사”, “지인과의 식사 약속” 등 2016년부터 2019년 6월말까지 총 00건 00원을 사적으로 사용하였음

- 00과에서는 공용 메시지 시스템의 발송내역을 모니터하여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공용서비스를 일부 사적으로 사용함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, 감사기간 동안 전 부서에 사적이용 금지 안내 공문 총 3회(2019.05.23./2019.01.28./2017.09.26.)만 발송하고 그 외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

조치 사항

- 00과장은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공용물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매년 예방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바람.(시정)
※ 관련 직원 신분상 조치(주의)